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6가단405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3613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6가단40591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다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김민주

변론 종결 2021. 11. 10.

판결 선고 202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경 퇴직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D'라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10. 10. 1. 공급자를 이 사건 업체,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를 아래 표 '도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업체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는 '도급금액지불일자'란에 기재된 일자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도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10. 01.	6,300,000 E		2010. 10. 07.	
2010. 10. 01.	18,150,000 F		2010. 10. 07.	
2010. 10. 01.	25,350,000 G		2010. 10. 08.	
2010. 10. 01.	5,382,500 H		2010. 11. 11.	
2010. 10. 01.	22,680,000 I		2010. 12. 06.	
합계	77,862,500			

다.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업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 B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77,862,5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업체가 원고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송금은 원고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업체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이 사건 업체에게 송금하겠으니 그 중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원고 측에게 반환하거나 원고를 위한

로비자금·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들이 응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원을 송금하게 된 원인이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와 이 사건 업체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서류상 이루어진 거래로 탈세를 유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았는지 또는 위 금원이 원고를 위한 영업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고종영